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3. 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경과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125호)	김원이의원	2024.8.23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7차 전체회의 (2024.11.12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418호)	송옥주의원	2024.8.30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7차 전체회의 (2024.11.12.) 상정후 제안설명,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
가. 제42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2. 26.)

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
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나. 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 3. 6.)에

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
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산법안심
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김종자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·생산을,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, 국가 등이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·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4조 및 제12조).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김의”를 “김 종자의 배양·생산과 김의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물질의 연구개발·보급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김산업”이란 <u>김</u> 의 생산·양식·가공(단순 건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제조·조리·포장·보관·수송·유통·수출·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	2. ----- <u>김 종자의 배양·생산과 김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7의2.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</u>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김의 품질향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	제12조(김의 품질향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
추진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5.</u> (생략) ② (생략)	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5. 김양식의 품질향상에 필요한</u> <u>물질의 연구개발·보급 등 생</u> <u>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</u> 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